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48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이재인[6548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11721호

시행일자 2022. 12. 29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-294호(2022. 12. 27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및 [별표 2]에 의한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 2022-136호, 2022.5.31.)이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되어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내용 :

-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(안 제13조)
-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(안 [별표4])
-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(안 [별표4의2])

#붙임

1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524(2022. 12. 27.) 1부.

2)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고시 일부개정안 1부.

3) 산정특례 고시 개정사항 관련 질의·응답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